창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헬스케어연구소 규칙(준칙)

제정 2021.07.29.

소관부서 : 산학협력단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창신대학교 부설 연구소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창 신대학교 부설 헬스케어연구소(이하 "연구소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사업)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산학 미디어 관련 기술과 관련된 연구 사업
 - 2. 산·학·연 협동 연구와 창업관련 사업
 - 3. 콘텐츠 개발 및 기술 상담, 이전 및 교육사업
 - 4. 외부기관 및 기업체로부터 위탁된 연구
 - 5. 보고서 발간, 연구 발표 및 강연회 개최
- 제3조(소장)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, 이 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제4조(조직 및 기능) ① 연구소에 호스피스완화돌봄센터, 스마트성공노화센터와 사무실을 둔다. 당해 사업의 필요에 따라 연구소 내에 기타 센터를 둘 수 있다.
 - ② 각 센터에 센터장 또는 부(원)장을 두고, 각 센터장 또는 부(원)장은 이 대학교 연구소의 전임 및 겸임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다.
 - ③ [각 센터]의 운영세칙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- 제5조(연구원 등) ① 연구소에 전임연구원, 겸임연구원, 학술연구교수, 특별연구원 박사후연구원, 보조연구원, 자체직원 등을 둘 수 있다.
 - ② 전임연구원은 이 대학교 재직 전임교원 중에서, 겸임연구원, 학술연구교수 및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인정된 자로 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한다.

- ③ 특별연구원 및 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인정된 자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.
- ④ 자체직원 및 보조연구원은 학사과정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.
- ⑤ 연구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⑥ 센터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연구소장과 협의하여 둘 수 있다.
- 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.
 - ③ 운영위원은 이 대학교 연구소의 전임 및 겸임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,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-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.
 -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 - 2. 연구소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
 - 3. 연구소 사업에 관한 사항
 - 4. 연구원 선임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
 -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7조(자문위원)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자문위원은 (관련분야 업계, 대학, 연구기관 등에 경력 5년 이상인 자) 5인 이내로 하고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제8조(재정) ① 연구소의 재정은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원금, 지방자치단체 및 협력업체의 지원금, 연구소의 사업수익금, 연구소발전기금으로 한다.
- 제9조(운영지침)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침

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